

2022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KUCRE  
한국연구재단 협력기관

2022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 본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각 대학에서는 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정에 맞게 이해충돌 예방 절차를 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내용은 다루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 차 례

## 이 책의 목적

06

I

##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09

II

##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13

- |             |    |
|-------------|----|
| 1. 재정적 이해충돌 | 17 |
| 2. 인적 이해충돌  | 28 |
| 3. 직무상 이해충돌 | 36 |
| 4. 지적 이해충돌  | 39 |

III

## 기관의 역할

43

- |            |    |
|------------|----|
| 1. 이해충돌 관리 | 44 |
| 2. 이해충돌 확인 | 45 |
| 3. 이해충돌 교육 | 47 |

IV

## 연구자의 책임

49

- |               |    |
|---------------|----|
| 1. 이해관계 관리    | 50 |
| 2. 이해충돌 교육 참여 | 57 |

## 참고문헌

58

# 이 책의 목적

- ▣ 본 길잡이의 목적은 대학연구자<sup>1)</sup>들이 연구 및 교육 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있음
- ▣ 본 길잡이에서는 이해관계의 개념,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의 종류, 이해충돌 예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음

I 1장에서는 이해충돌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III 3장에서는 소속 연구자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시행해야 할 원칙을 설명하고 있음

II 2장에서는 이해충돌의 종류와 각 종별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대표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 연구자가 더 쉽게 이해충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IV 4장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의무를 설명하고 있음



1) 대학연구자의 범위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연구자란 교원, 겸임교원, 소속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학술활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과학자와 예술가 등이 포함됨. 또한 대학(원)생도 소속 연구원으로서 대학연구자로 포함될 수 있음

대학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 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C O N F L I C T \* I N T E R E S T

\* M A N A G E M E N T \* I M P O R T A N C E \*

#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10

- 연구나 교육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연구자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연구나 교육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해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연구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① 연구진실성의 문제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등이 훼손될 수 있음



## ② 인간 대상자 보호의 문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생명의 안전, 인권, 사생활 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건전한 연구문화 저해



연구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연구자원과 업적의 공정한 배분, 연구자 간의 신뢰와 협동, 연구자의 연구 동기 등을 저해할 수 있음

### ④ 학문연구의 신뢰 문제



연구 결과의 편향과 왜곡 등으로 인해 학문과 연구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

### ⑤ 학문후속세대 양성 문제



학문후속세대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연구 및 교육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된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충돌이 연구·교육·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C O N F L I C T \* I N T E R E S T  
\* D E F I N I T I O N \* C L A S S I F I C A T I O N \*



---

#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

1. 재정적 이해충돌
2. 인적 이해충돌
3. 직무상 이해충돌
4. 지적 이해충돌



#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14

## 1 정의

- 이해충돌이란 제3자가 보기에 연구자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함<sup>2)</sup>

## 2 종류

- 연구 또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재정적 이해충돌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과 금전적인 이익에 관련된 경우<sup>3)</sup>



### ② 인적 이해충돌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전(全) 과정이나 연구기회, 연구 자원, 업적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③ 직무상 이해충돌

연구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여 연구자 본연의 역할보다 부수적 역할을 우선하는 경우



### ④ 지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이념, 신념, 종교, 지적 성향 등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3)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p.30.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각 기관마다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20.09.21. 시행)  
제18조에서는 이해충돌을 '이해상충'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01

## 재정적 이해충돌

###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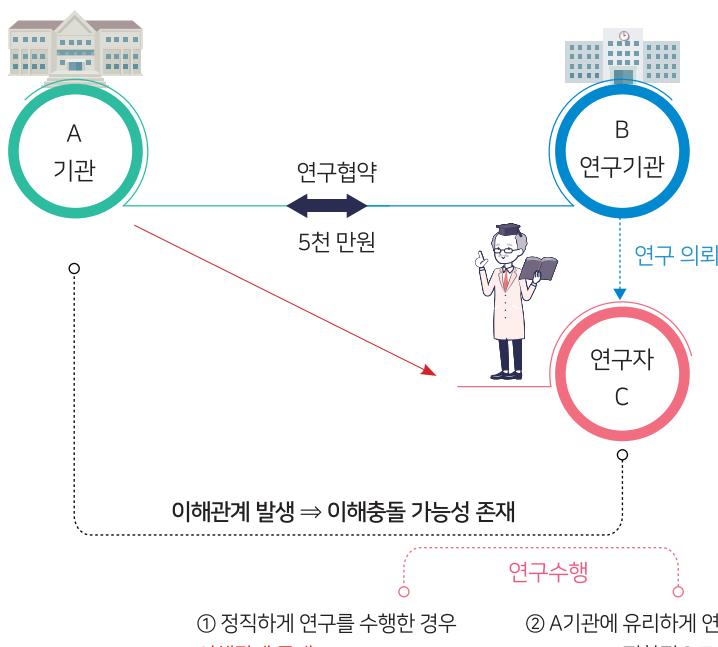
-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 중요성

- 재정적 이해충돌은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해충돌 유형이므로 우선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야 함

### 3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과 실질적인 이해충돌

- 그림과 같이 A기관이 B연구기관의 연구자C에게 연구협약을 통해 5천만원을 지원하고 특정 연구를 관리했다고 가정하자.
- ↳ 돈을 주고 연구를 의뢰한 순간 A기관과 연구자 C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① 연구자 C가 연구를 진실되게 수행했다면
  - ↳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음
- ② 그러나 연구자 C가 A기관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 ↳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됨

## 4 예방방안

- 연구자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관리를 포함하여 연구 전 과정을 소속기관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 5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 모든 직간접적 경우를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연구자 또는 연구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 5-1.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

- ①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급여, 연구비, 자문료, 강연료, 회의비,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
- ② 기업 또는 단체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③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현금, 주식, 스톡옵션, 소유권 등을 받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례 관련 질문



**Q**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무조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소속기관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 받고,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협약 및 신고)가 아닌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차명(연구자의 지인, 친인척, 기타 법인, 개인 기업 등)을 이용하여 계약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구자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자문료, 강연비, 회의비 등을 받고 외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연구자의 외부활동을 소속기관에 알리고 규정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해할 정도로 과도한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❷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연구자 단독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로열티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연구자가 대학 등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비록 기업과 협업을 통해 발명을 한 경우라도 소속기관에 발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연구자가 발명한 연구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는 소속기관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동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특허권의 활용으로 발생한 로열티는 해당 기관 내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직무상 연관성이 없는 자유 발명인 경우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동 발명의 활용 권리와 그에 따른 수익금은 연구자(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 내규가 동 수익금을 기관과 연구자가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❸ 연구자가 평소에 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나요?

**A**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유 지분이 큰 상태에서 해당 기업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를 회피하거나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연구결과에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5-2. 소속기관 외에 기관, 조직, 단체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 ①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여행경비, 항공권, 숙박비, 식비, 교육훈련비, 상품권, 접대, 선물 등을 받는 경우
- ②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연구인력, 장비, 시설, 재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 ③ 연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이사 또는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 연구자가 간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례 관련 질문



**Q** 연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연구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기업 등이 연구를 위해 연구와 관련된 지원(연구인력, 장비, 재료 등)을 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연구를 지원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왜곡하거나 변형해서는 안되고, 연구결과 발표시 기업의 지원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Q** 연구자가 A기관의 사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은 바가 없으나, A기관의 업무(사업)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A** 위의 경우 A기관의 사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A기관의 연구과제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결과를 보고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때는 A기관의 사외 이사직 수행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재정적 이해충돌 신고 범위

### 1. 재정적 이해관계 해당사항

- a.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상(예: 컨설팅 비용 또는 사례금)
- b. 지분권(예: 주식, 스톡 옵션 또는 기타 소유권 이익)
- c. 지식재산권(예: 특허 또는 저작권)
- d.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나온 로열티, 기술료, 수수료 또는 유사한 대가(로열티 지불)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또는 대학을 통해 받거나(예를 들어 대학과의 라이센스 계약)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 e. 개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관리직, 경영진 및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1. FINANCIAL INTEREST

- a. salary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e.g., consulting fees or honoraria);
- b. equity interests (e.g., stock, stock options or other ownership interests);
- 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g., patents or copyrights);
- d. royalties, license fees, or similar payments (“Royalty Payments”)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ther received directly from the Interested Business, through the University, e.g., through a University license agreement, or received from another institution;
- e. directorships, executive roles and other special relationships with a Business having the potential for personal material gain.

## 2. 재정적 이해관계의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는 재정적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로열티 지불 이외의 대학의 급여 또는 기타 보수
-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미국 고등 교육 기관, 학술 교육 병원, 의료 센터 또는 미국 고등 교육 기관부설 연구 기관이 후원하는 세미나, 강의 또는 교육 활동에서 얻은 소득
-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미국 고등 교육 기관, 학술 교육 병원, 의료 센터 또는 미국 고등 교육 기관부설 연구 기관의 자문 위원회 또는 심사 패널의 수행 대가
- 독립된 출판사로부터 받은 저자로서의 인세, 편집자 또는 심사자로서 받은 로열티 또는 기타 수입
- 개인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관리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 자산(예: 뮤추얼 펀드)
- 개인의 가족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정적 이해관계. 단, 개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피부양 자녀가 보유한 이해관계는 제외됨

## 2. FINANCIAL INTEREST DOES NOT INCLUDE

-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rom the University other than Royalty Payments;
- income from seminars, lectures or teaching engagements sponsored by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 academic teaching hospital, a medical center, or a research institute that is affiliated with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 income from service on advisory committees or review panels for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 academic teaching hospital, a medical center, or a research institute that is affiliated with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 royalties or other income received from an independent publishing company arising out of authoring, editing or reviewing publications (print or electronic);
- diversified financial holdings that are not controlled, influenced or managed by the Individual (e.g., mutual funds); and
- financial interests held by a member of the Individual's Family but not known to the Individual, except for interests held by the Individual's spouse or domestic partner or dependent children, which are deemed to be known by the Individual.

## ○○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명 '○○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활용된 연구보고서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2차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S대학교 A교수는 ○○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평가' 연구를 의뢰받고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계약(연구용역비 2.5억원)을 체결하였다. A교수는 동 연구 용역비 이외에도 ○○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 받았다. A교수는 ○○사 측의 요구에 따라 ○○사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락한 연구보고서를 ○○사 측에 제출하였고, ○○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A교수가 제출한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사 측은 소송에서 A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험데이터를 근거로 ○○사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 교원 창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

### 1. 고려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서 대학 내의 창업 및 기업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육성하고 있음

- 대학 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속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지식재산권 및 인프라의 사용 및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26

### 2. 이해관계

소속기관 내에서 연구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또는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적 이해충돌의 회피 : 대학 내에 기업을 설립하더라도 기업과 대학의 회계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 연구자 개인이 대학 내의 교원으로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됨
  - 대학의 교원으로서 개발·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을 대학의 승인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됨
- 직무상 이해충돌의 회피 : 대학의 교원이면서 기업의 창업자로서 겸직이 가능하나 다만, 기업 활동이 교원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함<sup>4)</sup>
  - 자신이 창업 또는 근무하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직무를 유예·경감 받고자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속 기관의 학생 등을 자신이 창업한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할 때는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지켜야 함



## 교원의 창업 시 이해충돌 예방 관련 질문

☞ 국가연구과제에 이미 참여 중인 자신의 대학원생을 지도교수가 창업한 기업이 고용할 수 있나요?

Ⓐ 지도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지도학생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 과도하게 학업 이외의 업무를 맡김으로써 대학원생 본인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학생이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수는 자신의 기업에 매몰되어 참여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교육, 지도에 소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신이 창업한 기업도 연구비를 획득하여 연구수행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연구수행 과정에서 소속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소속기관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결과물은 연구과제 수행 기관(창업기업)에 귀속되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전이나 수행 과정에서 소속기관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이 창업한 기업으로부터 교원으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신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의 공정성과 진실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연구과제의 범위와 연구 결과물의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02

### 인적 이해충돌

28

#### 1 정의

-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갈등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 기회, 수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문제점

- 연구기회, 자원, 업적 평가 등이 불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연구의지를 저해하고 연구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음

### 3 인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과 실질적인 인적 이해충돌

- 그림과 같이 J대학에 재직 중인 C교수의 딸 H양이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C교수와 H양 사이에는 인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관계는 있으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H양과 자신의 어머니인 C교수 사이에 지도교수–지도학생 관계가 성립된다면
  -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에게 평가를 수행하며 연구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이해관계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예방방안

- 연구자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 앞선 사례에서 C교수는 H양의 지도교수, 지도위원 등 공적인 역할을 맡지 않아야 하며, H양이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다른 교수의 강의와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5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30

- 직간접적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

## 5-1.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

- ①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② 연구과제, 연구비, 수주, 고용 등을 평가하며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인적 이해관계 관련 질문

#### ❶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요?

**A** 연구자의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친밀한 관계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사제지간, 동문, 선후배, 전·현직 직장동료, 연인, 동향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❷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고용은 연구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교원, 직원 등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감독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처리, 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❸ 자신의 자녀를 대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A**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활동 자체는 이해충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처리, 논문지도, 연구기회 부여 등에서 제 3자가 보기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인적 이해충돌 신고 범위

###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

다음 활동들은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 a. 모든 금전적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
- b.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수와 관련된 전문활동을 수행할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자원(대학시설, 소모품, 대학직원, 학생)을 활용할 경우
- c. 대학의 자금이 들어가거나 대학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교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최근에 존재했던 사람을 고용, 감독, 평가, 구매, 판매, 상업적 거래에 참여시키거나 재정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시키는 경우
- d. 교원의 직계 가족이나 친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하거나, 학술적 또는 행정적 혜택을 줄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시키는 경우
- e. 대학의 자금이 들어가거나 대학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교원의 직계 가족, 친밀한 개인적 관계거나 최근에 개인적인 관계였던 사람,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또는 조직을 위해 수행한 연구

### ACTIVITIES REQUIRING PRIOR APPROVAL

The following activities require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person to whom the faculty member reports:

- a. All major paid professional activities;
- b. The use of University facilities, supplies, University support staff, or students whenever privately undertaken work or work of a paid professional activity entails more than trivial use of those facilities, supplies, support staff or students;
- c. Where the funds involved are administered by the University, the hiring, supervising, or evaluating of, purchasing from, selling to, engaging in any commercial transaction with, or conferring or denying any financial or commercial benefit on any member of the faculty member's immediate family or a person with whom

- there exists, or has recently existed, an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 d. The academic evaluation of, or the conferring or denying of any academic or administrative benefit on any member of the faculty member's immediate family or a person with whom there exists, or has recently existed, an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and
- e. Where the funds involved are administered by the University, any research undertaken by a faculty member for a company or organization in which a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is held by the faculty member, any member of the faculty member's immediate family, or any person with whom there exists, or has recently existed, an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

## 사례

### 1. 친인척의 대학원 입학 시험에 관여한 교수

A대학 B교수는 대학원 입시에 자기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또한 조카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였다. 이 대학은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학교에 지원할 경우 입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B교수는 이를 학교에 알려서 해당 업무를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인적 이해충돌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

### 2. 자녀의 진학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

C대학 L교수는 자신의 딸을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을 동원해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작성시켰고, L교수의 딸은 이를 바탕으로 D대학에 합격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딸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L교수의 조교에게 SCI급 논문을 쓰게 하여 자신의 딸을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L교수는 실험데이터까지 조작하여 논문을 완성한 후 딸을 단독저자로 등재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E대학 대학원에 합격하였다. 자신의 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학의 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교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인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입시부정이기도 하다. 한편, L교수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및 공저자 문제<sup>5)</sup>

### 1. 배경

2017년 미성년자를 국내외 유명 학술지의 저자로 등재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서 유리하게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

### 2. 문제점

통상적으로 연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가 연구에 참여 또는 논문 저자로 등재되었을 경우,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업적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 3. 예방방안

연구자는 미성년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논문 등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는 공동연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학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5)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 2021.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붙임5.

## 03

### 직무상 이해충돌<sup>6)</sup>

36

|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학원생

#### 1 정의

- 연구자가 여러 기관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

#### 2 문제점

- 연구자가 소속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활동 등이 저해될 수 있음

6)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pp.31~33.

### 3 예방방안

- 연구자는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4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 ① 연구자가 외부연구나 외부강연을 중시하여 원 소속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소홀한 경우
  - ②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③ 연구자가 원 소속기관의 다른 연구원, 직원, 대학원생 등을 외부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 ④ 원 소속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연구자원을 개인적인 목적 또는 외부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 스탠포드대학교 직무상 이해충돌 규정

### 직무의 충돌

스탠포드대학에 정규직 교원이나 직원들은 스탠포드에 1차적 충성을 보여야 하며, 그들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를 그들이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쏟아야 한다. 개인의 외부활동이 스탠포드대학의 직업적 의무를 간섭하는 경우에는 직무 출동이 발생한다. 스탠포드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스탠포드에 임명된 기간 동안에 한해서 적용된다. 정규직이 아닌 개인은 스탠포드에 대한 의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이나 다른 고용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Conflict of Commitment

Academic Staff and Other Teaching Staff, employed on a full-time basis at Stanford, owe their primary professional allegiance to the University, and their primary commitment of time and intellectual energies should be to the programs on which they are working. Whenever an individual's outside activities interfere with professional obligations to Stanford, a conflict of commitment exists. In the case of Academic Staff and Other Teaching Staff working at Stanford on a part-time basis, this general principle applies to the extent of the Stanford appointment. Individuals on less than full-time appointments may engage in consulting relationships and other employment, to the degree that those activities do not interfere with their obligations to Stanford.

## 04

## 지적 이해충돌 7)

## 1 정의

39

이해충돌의 정의 및 종류

-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2 문제점

- 다양한 견해와 사고, 생각 등의 공존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론, 편향된 사고 등에 매몰되어 다른 견해나 사고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음

7)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외.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pp.31~33.

### 3 예방방안

- 연구자는 지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회피해야 함

### 4 공개 또는 관리의 대상

- ① 학술지 심사 등에 있어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편향, 학문적 신념·이해·입장 등과 반대 되거나 경쟁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게 된 경우
- ② 연구자 본인이 신뢰하는 이론 또는 어떤 사상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위변조, 왜곡되게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고려대학교

## 지적 이해충돌 규정의 예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2019.06.14.)

## 1. 제46조(지적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CONFLICT \* INTEREST  
\* INSTITUTION \* ROLE \*



# 기관의 역할

1. 이해충돌 관리

2. 이해충돌 확인

3. 이해충돌 교육

# 01

## 이해충돌 관리

44

### 1 내부규정

- 소속 연구자가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이해충돌 공개양식 및 예방창구

- 이해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제공하고, 이해충돌을 신고했을 때 이를 접수하고 예방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와 관련된 관리업무는 산학협력단, 연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존에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담당할 수 있음

## 02

## 이해충돌 확인

### 1 확인

-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관리

-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 사안 중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가 상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공개·축소·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함

##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강령을 뒷받침하는 지침

### : 이해관계 공개 및 이해충돌 해결

- ① 연구를 발표하거나 출판할 때 이해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 ② 연구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독하는데 적절한 사람을 포함시키기
- ③ 연구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요구하기
- ④ 연구자에게 연구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역할을 바꾸거나 줄이도록 요구하기
- ⑤ 연구자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

## Disclosure of interests and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 : A guide supporting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① requiring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interests, for example when presenting or publishing the research
- ② involving an appropriate individual to oversee some or all of the research activity
- ③ requiring the researcher to absent themselves from any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research
- ④ requiring the researcher to play a different or reduced role in some or all of the research
- ⑤ requiring the researcher to relinquish financial or other interests

## 03

## 이해충돌 교육

### 1 교육

47

기관의 역할

- 기관은 교원, 연구자, 행정직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을 교육하고 예방 및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이해충돌에 대해 알려주고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법,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법 등을 교육해야 함



CONFLICT \* INTEREST  
\* RESEARCHER \* RESPONSIBILITY \*

# IV

---

## 연구자의 책임

---

1. 이해충돌 관리

2. 이해충돌 교육 참여

# 01

## 이해충돌 관리

50

### 1 재정적 이해충돌

- 연구자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01

## 이해충돌 관리

50

### 1 재정적 이해충돌

- 연구자는 재정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축소하거나 회피해야 함

## 1-1. 주의 또는 회피해야 할 연구 활동

- 국가, 국민,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재정적 이익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피해야 함
  - ① 국가안보, 국방, 외교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국가에 위협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②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 ③ 내·외부 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사례

#### 연구자의 재정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 사례 (실제사례를 각색하였음)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K연구원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안받았다. K연구원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해외기업으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2년 만에 해당 기업은 K연구원의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K연구원을 해고하였다. K연구원은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기업으로 재취업하려고 하였으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었다.

연구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리 높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만약 첨단 산업기술 보호가 어렵고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 해당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 1-2.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 연구자는 재정적 이익이 연구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해당 연구나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자신이 창업한 회사 또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구를 의뢰한 경우
  - ② 의뢰자가 연구자로부터 특정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 ③ 연구의뢰자(기관)와 연구자간의 특수한 인간관계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연구의뢰자가 연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연구를 의뢰한 경우

### 참 고

#### 연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

##### 제13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3. 공개해야 하는 경우

-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1-4. 공개 대상

- 연구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여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②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함

예시

#### 연구 결과의 발표

1. 본 연구를 수행한 이○○과 조○○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김○○은 (주)대한○○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본 연구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 본 보고서는 (주)○○개발에서 의뢰하여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수행되었음
3. 본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박○○은 연구지원기관인 (주)○○기술의 주주이면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4.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주)○○제약에서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받았음  
(\*여행경비: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 ③ 공동연구자 :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밝히고 협의해야 함

## 2 인적 이해충돌

- 연구자는 인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 또는 회피해야 함

### 2-1.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 미성년자, 친인척, 가족, 그 외에 가까운 지인 등을 부당하게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승진, 고용, 연구비 지원 심사, 연구 심사 등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2-2. 공개해야 하는 경우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친밀한 관계 또는 대립적인 관계 등이 연구 수행 또는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3. 공개해야 하는 대상

-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공개해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②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인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함
  - ③ 공동연구자 :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인적 이해충돌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함

예시

#### 인적 이해충돌의 공개

1. 저자 독고○○과 채○○은 모녀지간으로 채○○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2. 본인 남궁○○은 서○○과 사제지간으로 본 연구비 지원심사에 지원한 서○○의 연구계획서 심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회피를 신청합니다.



### 3 직무상 이해충돌

- 연구자는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거나 공개해야 함

#### 3-1.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 ① 외부활동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본연의 직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② 교수가 학생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

#### 3-2. 공개해야 하는 경우

- 연구자 본인이 외부 활동을 하거나 대학원생 등을 외부 활동에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3-3. 공개 대상

-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공개해야 함.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협력기관(공동연구의 경우) 등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에 공개해야 함
  - ② 학회, 학술지, 보고서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직위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를 밝혀야 함
  - ③ 공동연구자 :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연구자에게 자신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밝혀야 함

예시

#### 직무상 이해충돌의 공개

1. 본 보고서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선우○○은 XX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약 (무보수) 사외이사로 활동 중임



## 4 지적 이해충돌

-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지적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축소 또는 회피해야 함

### 4-1. 회피가 바람직한 경우

- 자신의 종교, 신념, 학문적 입장, 정치적 성향 등이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

#### 지적 이해충돌 회피

1. 본인 최○○은 심사대상인 원고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본 원고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2. 본인 신○○은 교수 후보자 윤○○이 평소 주장하고 있는 신념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교수 임용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 02

### 이해충돌 교육 참여

- 연구자는 기관이 주최하는 이해충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교육을 요청해야 함

#### 참고

##### KIRD 연구윤리 교육 안내(온라인)

<https://alpha-campus.kr/kirdSpecial/guide>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인알파캠퍼스 KIRD스페셜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효빈외. 2019. 신진연구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 호주국립보건의료연구회. 2020.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강령과 세부 지침.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외. 2021.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붙임5. 한국연구재단.

### 기관 홈페이지

- 연구윤리정보포털, cre.re.kr
- 토론토대학교 홈페이지, <https://research.utoronto.ca>
- 콜롬비아대학교 홈페이지, <https://universitypolicies.columbia.edu/>
- 스탠퍼드대학교 홈페이지, <https://doresearch.stanford.edu/>

### 관련 법 및 규정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 산업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비매품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집필진**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조진호 서울대학교 강사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기획**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발행/인쇄일자**

2022년 10월 31일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편집/제작**

대한생각 010.2946.2070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2

이 책자의 원문파일(PDF)는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윤리정보포털(<http://cre.re.kr>),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홈페이지 (<http://kucre.or.kr>) 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